

## 高齡化社會와 老人問題

金 宇 城

經營學科

## 〈要 約〉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은 우리나라의 人口構造에 큰 變化를 일으켜 高령자人口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現代社會는 高령화사회로 되어가고 있다. 피라밋형이던 연령분포가 이제는 거의 筒形으로 均等化해가는 경향이며 따라서 老人의 問題 卽 高령화사회의 문제는 一時的이거나 과도적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물론 당장의 對策은 老人福祉法의 制定으로 老年의 生計를 돕고 양노시설과 老人亭의 新設을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전통의 美德인 敬老思想의 계승으로 工業化社會의 가족제도가 안고 있는 非情性을 극복하는 일이 보다 艱難한 일인 것이다. 老人問題는 年金의 支拂이나 양노 시설의 확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人間은 스스로 일하고 봉사하는 보람없이 生存의 즐거움을 얻을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進行中인 高령화社會의 추세를 대응하는 구조적이고도 綜合的인 社會政策을 成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A Study on Welfare Programs for the Aged

Kim Woo-Sung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 〈Abstract〉

In close pace with the talked-about national modernization, we are urged to promote welfare programs for the masses particularly including aged people.

The sooner the nation approaches the advanced country type, the more old people increase.

Most regrettably, however, our society may be no exception as far as this particular social issue is concerned.

Due to the prevalence of so-called nuclear families in our community patterned after advanced societies, the aged are becoming more and more isolated from the active scenes around them, with their sense of estrangement growing markedly.

We cannot too much stress the necessity of promoting social welfare for aged people, patterned after the systems in advanced countries.

We also reminded of our traditional ethics, in which the aged are always respected, implanting the "respected the aged" spirit among youngsters at home and in society.

It is needless to elaborate that we should respect them unconditionally, if we are to uphold the highest virtue as social beings and family members.

To comfort the aged materially and physically is necessary. But this is not enough if we are really to please them.

In other words, we should give them opportunities to serve their families and society, providing jobs to earn money by themselves.

As of this year, the legal retirement age was set at 70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10 to 15 years later than in this country.

Consequently,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quickly should map out comprehensive measures to back up legally the settlement of problems involved in the aged population, including extending the age limit and reemployment, not stopping at the persuasion of enterprises for the voluntary enforcement of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 I. 序 論

最近十餘年 發表된 人口問題에 關한 여러 資料에 依하면 우리나라의 人口構造에는 큰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것을 發見하게 된다. 그것은 生存에 必要한 自然資源의 將來에 있어서의 枯渴의 問題혹은 公害에 依한 生命의 파괴등을 고려한다면 現在의 高度 經濟成長에 一定한 制動을 걸고 自然과 人間의 生命을 保護하기 위해서 人口를 억제할 必要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人口構造는 고령자人口의 비중이 높아질에 따라 現代社會는 高齡化社會로 되어지고 있다. 이와같이 老人문제는 이미 特殊年齡層에 국한되는 문제로서만 다루어질 수 있다. 工業化에 따른 生活水準의 向上은 필연적으로 人口의 動態를 多産多死構造에서 少産少死型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피라밋型이던 연령분포가 이제는 거의 鐘型으로 均等化해가는 경향이며 따라서 老人의 문제 換言해서 高齡化社會의 문제는 一時的이거나 과도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一般의이고도 장기적이며 構造적인 社會政策으로 대응해야할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만해도 이제 60세이상의 老年人口가 2百萬名 가량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의료와 복지정책의 발달은 필경 평균수명을 더욱 늘여 감정이 명백하며 다가오는 80년대 중반에는 老年人口가 전체人口의 4.3%에 이르리라는 전망이다 당 齡의 構造의이고도 종합적인 社會政策의 마련이 일 석부터 추진되어야 옳았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의 경우는 아직까지 老人복지법과 같은 法制의 기 본조차 마련되지않은 형편이며 老人政策은 거의 不 在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社會政策의 보 살필도 많지 못하는 가운데 核家族化의 경향에 밀 려 家庭안에서도 의로와져가는 오늘의 老人들은 갈 곳을 찾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大韓老人會에 따르면 부양가족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老人은 현재 8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이다. 그중 양노시설등에 수용보호되는 老人은 3%정도인 2천5백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老人들이 쉬 어갈 老人亭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전국에 겨우 3천9백여곳의 老人亭이 있을뿐으로 2백만의 老人들 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다. 따라서 당장의 대책은 老人복지법의 제정으로 老年의 生計를 돕고 양노시설과 老人亭의 進설을 촉진하는 일이 시급하 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우리전통의 美 德인 敬노자상의 계승으로 工業化社會의 家族制度 가 안고 있는 非情性을 극복하는 일이 보다 요긴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社會의 高齡化경향은 그러한 局 部的 政策만이 아닌 구조적이고도 종합적인 社會政 策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하나가 停年 의 문제이다. 企業 또는 官公署안에서의 연령구성 이 차차 高齡화하는 것을 피하기 어려운 추세라면 이제 고용의 문제도 젊은 연령층만큼 중심으로 설 계될수 없다. 政府에서도 일찍이 거론을 시작했으 나 停年의 上昇은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자면 政府는 政府대로 企業은 企 業대로 종사원의 연령 구성분포를 재검토하여 高齡 化사회에 맞는 適正배치를 시도해야 할것은 물론이 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老年들 자신 의 능력개발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工業化 社會에 있어서는 政府든 企業이든 人件費와 능률의 問題를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老年들 자신 도 人件費에 상응하는 능률의 확보를 스스로 계을 리해서 는 안될 것이다. 老人問題는 年壽의 延長이 나 양노시설의 확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人間은 스스로 인하고 봉사하는 보람이 있는 生存의 즐거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政府 는 이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進行中인 高 齡화 社會의 추세에 대응하는 구조적이고도 종합적 인 社會政策을 成案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II. 老人問題의 古典과 現代

老人의 社會問題를 歷史的으로 고찰한다면 아마도 1894年의 英國의 C. Booth의 著作에 포함되어 있는 貧困問題에 關한 研究에 그의 端緒를 찾을 수 있다.<sup>(1)</sup> 當時 英國의 老人에 對한 公的 救濟로서 都市老人과 農村老人을 比較하면 前者는 施設救濟와 醫療혜택이 後者는 住居救濟가 支配的이었으나 Booth는 都市 農村을 不問하고 住居救濟를 原則으로 하고 더욱이 從來의 救貧法이 아니라 賦課年金에 依한 住居救濟로 옮겨간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 Booth의 主張은 現代에 있어서도 큰 意義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명히 最近의 老人福祉에서 보여지는 住居福祉의 原則的 萌芽를 內包하고 있다고 하겠다. Booth는 當時의 獨占企業家에 依한 고용노동의 增加에 따른 退職老人의 貧困化를 實證的으로 指摘하고 救貧法에 依한 극빈자(Pauper)의 낙인(Stigma)을 날카롭게 批判하였다. 當時의 救貧法에 依한 行政的措置에 있어서는 基本理念으로 不道德한 老人들은 外除하는 措置를 取하고 있었지만 Booth가 作成한 救貧行政政策의 指標에는 當時의 救貧法의 理念이 어느程度 남아있다. 예를들면 品行이 단정하다던가 性格이 善良하다던가가 救貧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다. Booth는 總괄적으로 관찰하여 모든 退職老人들은 貧困하며 이러한 貧困한 老人들에 對하여는 救貧法에 依하여 救濟된다는 수치를 얻게기 爲해서는 賦課年金의 方法에 依한 住居救濟로서 貧困老人問題의 解消를 提起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이 들어서 生活保護라는 불명예를 받음이 없이 모든 老人이 年金에 依해서 더욱이 保險年金이 아닌 賦課年金에 依한 生活의 自立을 이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Booth의 研究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老人問題는 退職에 依한 貧困의 問題로부터 始作되었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貧困→疾病→孤獨→無爲로 問題의 重點이 옮겨가고 있다 戰後 英國의 老人問題는 P. Townsend의 “老人家族의 研究”에서 보는 바와같이 老後의 情緒的 孤獨과 社會的 孤立的 問題가 많은 사람들의 關心을 끌고 있는 것이다.<sup>(2)</sup>

韓國의 老人問題는 1960年以後 급격히 增加하기 시작한 老人人口의 存在는 고용노동의 增大에 依한

早期停年制의 보급, 都市化에 依한 地域共同體의 解體 核家族化에 依한 친족으로부터의 孤立等 老人의 生活를 둘러싼 社會構造의 急變에 直面하여 드디어 自力으로 安全하게 暮를 보전할 장소를 잃어버린 셈이 되었다. 韓國의 老人問題는 貧困, 疾病, 孤獨, 無爲라는 生活上의 不安과 위기等 급격한 近代化의 짧은 時間的 흐름속에서도 거의 同時에 併存하여 중복되어 發生됨으로서 그 複雜性和 困難性이 存在하게 된다. 民主主義를 지향하게 된 韓國은 近代化의 指標로서 物質本位의 個人主義와 經濟的 효율주의를 擇하였다. 그것이 經濟成長을 경이적으로 비약시키고 消費水準의 上昇을 이룩한 것은 事實이다. 그렇지만 그 反面에 非經濟的인 社會的資源에의 公共投資는 極도로 억제되어지고 勞動市場으로부터 排除된 老人의 生生活障은 전통적인 가족부양과 저축의 方法을 허물어 버렸다. 結局 近代化에 따른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社會的으로 老後의 生活保障을 희생으로 얻어진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이것을 老人의 취업구조와 관련시켜 보면 老人問題는 近代化와 더불어 產業構造의 變化에 관련하여 發生되어진 것이다.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고용계층의 증가에 의하여 農業 및 自營業계층이 減少하고 從來의 老人就業의 餘地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젊은층이 고용취업을 위해 地域的으로 移動함으로써 父子間의 職種的 分離가 增加되어지고 저임금과 저질의 勞動條件下의 영세기업과 家內企業에 겨우 老人이 일자리를 求했다든가 모든 高度經濟成長에 있어서 老人의 취업은 그 稼得所得의 폭이 줄어들어서 취업 老人의 相對的 貧困化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남으로써 해서 먼저 老人의 社會問題化의 要因을 발견하게 된다. 더욱이 人口의 고령화에 의하여 젊은 勞動力이 부족하여 그 結果로서 老人勞動力의 再評價가 必然的으로 일어나리라는 낙관론도 있지만 企業이 勞動力의 不足을 經濟효율이 낮은 고령자로서 보완하는 方向으로 直線的으로 移行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저임금으로 經濟的 效率을 높일려는 企業努力은 고령자의 고용노력보다도 도리어 機械化의 促進, 부녀노동의 고용촉진, 그위에 低開發國家의 젊은노동자의 고용을 우선시키기 때문이다.

## III. 老人의 生活構造와 生活保障

最近의 生活構造의 變化는 老人의 生活保障費와

關係되는 重要한 課題로서 지적된다. 最近 여러가지 研究調査에서 明白히 되고있는 바와같이 老人夫婦(65才以上)의 家計構造와 젊은夫婦(30才前後)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食費라든가 雜費에서 約 60%의 支出增加가 發見된다. 그 理由는 食費에 關해서 고찰하면 老人夫婦自身들이 消費하는 것이 半이라면 나머지 半은 親戚이나 親知들의 來訪時에 消費되는 것이다. 또한 雜費도 親戚 및 親知들과의 交流를 위한 諸支出로 充당된다.

이와같이 親戚간의 연대와 社會의 연대를 維持하기 위한 必要經費는 老人의 生活構造의 特性으로서 認定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老人의 健康維持를 爲한 衛生費와 疾病의 경우의 의료비는 젊은 世代와는 달라서 큰 항목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最近의 老人의 疾病構造는 만성화와 합병증상화를 特性으로 하고 있지만 長期에 걸친 看護를 위한 費用은 現在의 醫療保險制度로서는 充당되지 않는 領域인 것이다. 또한 비교적 健全한 老人에 있어서는 社會의 活動을 維持하여가기 위해서 補聽器, 老眼鏡, 車椅子等의 使用으로 生理的 불편을 克服할 必要가 있으며 疲勞와 위험을 보다 적게하기 위해서 交通 通信機關利用의 諸經費가 當然히 家計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老年期の 生活時間은 生産勞動의 時間보다도 여가 活動의 시간이 增大함으로써 여가활동의 多樣化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生活構造에 있어서 老年期特有의 지출항목이 必要하다고 思料된다. 老年期の 家計費가 여대까지의 最低生存費가 아니고 必要生活費를 基準으로 하여 계산되어 所得保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老人의 生活構造에 있어서 統合성과 自立성과 日常性을 確保하는 것이 不可能하다.

節約을 美德으로 삼아왔던 現在의 老人에 比하여 消費를 美德으로한 經濟構造속에서 成長하여온 現在의 젊은 世代가 老年期를 맞았을때 現在의 老人의 消費水準으로 生活上 必要한 經費가 充足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 Ⅳ. 價値規範의 變化와 老人問題

老人의 社會的 處遇는 産業革命以前에 있어서 貧困老人들에 對한 富者들의 慈善事業의 救濟로 이룩됨으로서 道德的 및 宗教的 價値規範이 支配적이었다. 거기에서는 富者는 弱者에 對한 道德心으로 充

滿되었으며 國家의 救貧法도 貧困한 老人들의 不道德性에 對한 報復的인 措置를 理念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産業革命後의 價値規範은 經濟效率的인 老人觀으로서 老後의 生活保障도 現役勞動者의 勞動能率을 確保하기 위한 措置이기 때문에 經濟效率을 가진 人間과 가지지않은 人間 사이에는 분명히 社會的 差別이 存在한다. 社會學的考察로는 實績社會(achievement society)로서 經濟的 實績이 中心的 價値體系를 이루는 資本主義體制에서 經濟的 效率이 낮은 老人은 그의 社會的 價値도 낮은 것은 當然한 일인 것이다. 모든 人間에게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를 保障하는 것이 社會保障 및 社會福祉의 目標라고 한다면 그와같은 實績의 評價에 따라서 老年期の 社會的인 대우에 差別을 두는것은 분명히 憲法的 理念을 逸脫한 價値規範이라고 하겠다. 지금으로부터의 老人에 對한 價値規範은 經濟的 效率에 따라서 差別하는 老人觀이 아니고 生命의 效率(life achievement) 내지 生命의 價値에 規範을 둔 老人觀으로 變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老年期の 生活必要를 充足하는 충분한 經濟的 自立을 基礎로하여 健康하고 文化的인 生活를 모든 老人들이 差別없이 享有할 수 있는 生活規範이 確保되어야 할 것이다.

老人問題에 對한 社會學的 approach는 老人을 社會的 弱者 내지 小數集團으로 취급하기 前에 먼저 老人을 人間社會를 構成하는 普遍的인 屬性의 하나로 취급하려는데 그 特徵이 있다. 따라서 여러 世代가 연령의 차이로 因해 歷史的으로 서로 다른 生活體驗을 가지면서도 같은 時代에 共存한다는 社會的 事實로서 出發한다.

老人世代를 社會的으로 어떻게 대우하여 왔으며 또한 다른 연령世代가 어떻게 對應하여 왔는가를 살피면서 老人의 生活體系가 경험한 뒤기구조를 진단하고 制度的인 變革을 志向하는데 老人社會學的 approach의 目的이 있다.

老人의 취업문제에 關한 社會學的理論으로서 論爭되고 있는것은 Engagement와 Disengagement의 兩論이 있다. 예를들어 停年制를 살피보면 前者는 停年制를 人間의 일하고저 하는 基本的 權利를 박탈하는 것임으로 原則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強制되지 않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老年期의 社會的 必要에도 보다 더 적합하다고 主張한다. 이에 對하여 後者는 死期에 가까워진 人間은 職業

으로부터 隱退하는 것이 죽음으로 인한 社會的 영향을 보다 크게하는 意味에서도 生態的規則에 적합하고 죽을때까지 職業이라는 生産活動을 계속하는 것은 個人的으로도 또한 社會的으로도 有害함으로 停年制를 긍정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그러나 이 두 主張은 老年期의 職業을 어떻게 評價하고 退職老人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의 問題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職業을 어떤 收入을 위한 手段으로서가 아니고 自己表現이나 社會的承認에의 必要를 충족시키는 매개로서 받아들이고 그리하여 職業에 代身한 다른 市民的活動이 있어져도 그의 必要가 充足되어진다면 兩者의 主張은 똑같이 일과 市民的活動이 老人에 대하여 가지는 忤隙을 肯定하는 것이된다. 結局前者의 主張은 老人에 對한 強制的인 職業勞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後者에 있어서도 老人의 市民的活動으로 부터의 完全은퇴를 긍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다. 物的生産力의 經濟的効率에 關한 勞動에는 強制에 依하지 않는 停年制가 必要하지만 自己表現 및 生命價値의 증진이 되는 일에는 연령制限을 加해야 하는 여하한 社會的 理由도 없다.

老人福祉에 關한 社會學的論爭으로서 社會的分化和 社會的統合의 理論이 있다. 一般的으로 老人의 生活體系는 여러가지 社會的分化的 過程에서 專門化되고 近代化 되었던것이며 老人에 對한 社會福祉에 있어져도 그의 處境가 個別化되고 專門化되고 分類化되는 것이 老人福祉의 近代化的 指標로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家族에 있어서도 老人家族은 아이들과 分化하여 別居하는 核家族의 普通化가 바로 近代化的 方向性으로 肯定되고 또한 老人들만의 마을 形成이나 老人 Club等과 같은 年齡집단으로의 分化傾向이 肯定된다.

또한 老人에 關한 社會學理論에는 老年期の 行動規範을 같이하는 연령집단의 Sub-culture의 研究가 있다. 老人의 集團意識化 및 特殊集團化를 촉진하고 一般社會의 價値規範에 저항하는 老人 Power를 形成하는 社會的 要因으로는 強制的인 停年退職에 따라서 社會적으로 排除되어진 健康한 老人들이 增加하고, 技能을 다시 活用하기를 원하는 教育程度가 높은 老人들이 늘어나고, 社會福祉로 老人들이 모이는 機會가 많아지고, 젊은 家族과의 접촉이 減少된것이 지적된다. 老人들의 副次文化(Sub-culture)가 도리어 老人들을 集團적으로 孤立化시키는 傾向이 있다는 것은 事實이지만 그러나 이 副次文化集

團은 社會的인 起爆點이 되어 制度革變運動을 展開하는 社會力이 될 可能性이 있다. 分化和 統合의 社會的 運動을 內的辨證法으로 파악한다면 이와같은 集團意識化가 반드시 社會的 進展에 對하여 單純한 否定的 機能을 가지는 것이라고 規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集團分化에 依한 否定的내지 抵抗的 機能은 다른 集團과의 새로운 統合化를 爲한 매개체가 되었을때 처음으로 肯定的機能을 가지게 된다. 例를 들면 로스안젤스의 老人 Club이 電話料金の 引上反對運動에 成功하였던 것도 勞動組合과 其外的 民主的인 地域集團과의 접촉을 通하여 世代와 階層을 초월한 統一的인 行動으로서 成果를 올린 것이었다. 老人의 生活에 關한 새로운 社會的 統合에의 科學的모색은 社會學에 課해진 任務中的 하나라고 하겠다.

## V. 結 論

老人問題의 對策을 生活體系의 統合性 自立性 및 日常性을 종합하여 考察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所得保障의 問題가 提起된다. 具體的으로는 취업대책과 年金制度의 問題로 되지만 취업에 關한 Copernicus的 轉換과 市場 Mechanism의 質的 轉換없이는 根本的인 解決은 바탕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停年制의 延長 및 고령자에게 적응하는 일의 開拓 고령자의 職業의 再起的 機會等은 對症療法으로서 現在 충분히 검토될수 있는 課題인 것이다.

停年制의 延長에 關해서는 年金制度와의 關係가 중요하며 中대의 勞務管理 및 人事管理의 必要性으로부터 생겨난 停年制를 고쳐서 老年期の 職業선택의 自由를 바탕으로한 停年延長을 再考慮할 必要가 있다. 現在와 같이 일하고 있는 경우에는 年金이 停止되는 退職要件의 年金이 아니고 Booth가 말하는 社會的 遺産으로서의 年金形態에 對應한 停年制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고령자의 職業에 對해서는 그 動機를 부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하다. 過去の 經驗과 身分에 구애됨이 없이 새로운 經驗과 새로운 社會的 承認을 求하고자 하는 必要를 開發하는 것이 중요한 觀點이 될것이다. 다음으로 老年期の 生活體系에 있어서 커다란 不安은 心身의 自立性의 상실이다. 保健醫療對策은 中대와 같이 非日常的인 병원 및 시설만으로 心身의 自立性을 保持하는 것은 不可能하다. 물론 老人自

身の必要와 그의 疾病構造를 관찰하면 單性질환을 가진 老人의 집에서 的 간호와 서비스가 바람직하다.

또하나 老人들의 日常性 가운데 住居對策은 오늘날 緊急을 要하는 課題의 하나인 것이다. 核家族化가 進行되던서 養老院等에 入住하는 老人들의 대부분은 貧困과 住宅의 問題 때문에 入住하고 있다. 老人들의 所得을 壓迫하지 않는 住宅의 確保는 커다란 關心事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老人福祉施設은 主로 健康한 老人들을 대상으로하고 老人들을 위한 住居는 經濟的인 困窮度가 入住의 基準이 되어있는 것이다. 要컨데 心身의 自立度와 生活의 日常性에 對應한 醫療서비스와 住宅서비스를 모두 中心으로한 老人施設의 統合化가 이루어져야 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끝으로 老人들의 生活體系가운데 學習의 必要를 充足하는 施策으로서 社會教育의 領域이 있다. 老人學校가 이제 始作에 불과하지만 老人自身の 자기 變革을 위한 學習을 할뿐 아니라 젊은 世代를 爲한 學校教育가운데 高齡化社會에 關한 知識과 老人의 福祉의 必

要를 理解하는 教育的 機會를 만드는 것이 必要하다.<sup>(3)</sup>

要컨데 老人問題의 福祉的 課題는 所得과 醫療와 住居와 教育에 對한 社會的 必要를 精確히 觀察하면서 老人들의 生活體系에 統合성과 自立성과 日常性을 부여하는 것이 現代的 課題라고 하겠다.

## 참고 문헌

1. Chares Booth: The Aged Poor in England and Wales, 1894, Macmillan and Co.  
松崎雅子: C.ブース 「老齡者貧困調査」について〇研究ノート 社會事業史研究 第1號 1973年 10月 社會事業研究會
2. Peter Townsend: The Family Life of Old People, An Inquiry in East London, 1957, Routledge and Kengan Paul Ltd.
3. 那須宗一: 「高齡者問題の教育的背景」 『社會教育』 全日本 社會教育聯合會 1973.